

# 긴급입찰공고 사유서

## 1. 용역요지

가. 용역명 : 일본 Oita Biomass 발전사업 타당성조사

나. 용역기간 : 계약일로부터 120일

다. 사업예산 : 금500백만원 (부가가치세 포함)

## 2. 긴급입찰공고 사유

### 가. 사업의 성격

- 본 용역은 해외건설촉진법 제15조의4 및 국토부훈령 제1151호 제8조제4항에 의거, 우리기업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수행하는 용역임
- 본 사업은 일본의 FIT(Feed in Tariff) 제도기반, 총 50MW(20MW 2기 + 10MW 1기)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설하고 20년간 운영을 통해 큐슈지역 전력회사에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임.
- 20MW 2기 사업은 태국사업자가 2017년 7월 사업권을 신청, 2018년 3월 경제산업성으로부터 ID(24엔/kWh) 및 20년간 사업권을 획득 하였으며 10MW 1기의 경우 일본 개발사에서 2019년부터 사업권 확보를 위한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
- 한국 건설사와 한국 운영사는 향후 태국사업자로부터의 20MW 2기 사업권 인수와 현지 개발사의 10MW 1기 공동추진을 통해 총 50MW 규모의 Oita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있음
- 이에 따라, 본 용역을 통해 Oita 지역 50MW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장, 제도, 세무 및 법적 여건과 재무적, 기술적 타당성을 조사하여 사업타당성 분석 및 원활한 사업개발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.

### 나. 긴급입찰 사유

- 본 사업은 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사업권(20MW x 2기) 승인이 완료된 사업으로, 신속한 사업권 인수 및 사업개발 수행 필요.  
이에 연내 타당성조사를 통한 조속한 사업검토가 요구되는바, 긴급입찰공고를 통한 적기 자료 활용 필요.
- 정상적으로 “협상에 의한 계약”을 추진할 경우(공고기간 40일) 최종 자료 작성을 위한 기간이 부족하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공고기간 단축 필요